울산광역시 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폐지의 건

의 안 888 번 호

제출일자 : 2012. 2.

제 출 자 :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○ 2013년 1월부터 런던협약에 의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 폐쇄가 불가피하여

○ 공공시설 용도폐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,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○ 2013년 1월부터 런던협약에 의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중구 2차 음식물

○ 2012년 1월구터 년년엽국에 의기 함께도 해당투기가 함시되어 궁구 2차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, ○ 2012년 10월경 광역시 소각장 증설 준공과 연계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에 조경조성이 예정 되어 있어, 광역시 요청에 의거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2012. 2. 25일 가동중단 후 용도폐지 및 매각정비코자 함. ○ 2012. 2. 25일부터는 SBK(음식물 처리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) 및 시 소각장에

○ 2012. 2. 25일부터는 SBK(음식물 서디 및 하수들다시 사원와시설) 및 시 조석장에 반입할 예정이며,
○ 온산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 중인 『울산광역시 유기성폐기물 신재생에너지화 시설』이 2012년 12월 준공되면, 2013년부터는 중구에서 발생되는 물량을 광역시와 협의하여 본 시설 및 SBK(음식물 처리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)에 반입 예정임.
○ 2013년 『울산광역시 유기성 폐기물 신재생에너지화 시설』가동시 광역시 공공시설 처리용량 1일 280톤(SBK 180톤, 온산 100톤)으로서,
○ 광역시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249톤으로 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 시설을용도폐지 하더라도 음식물 처리가 충분하여 시설폐쇄를 결정코자 함.

○ 울산광역시 구·군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현황

(단위 : 톤, 2011. 12. 31현재)

				\	<u> </u>	
구 분	계	중 구	남 구	동 구	북 구	울주군
연간 발생량	90,782	18,029	29,949	14,504	14,697	13,603
월 발생량	7,565	1,502	2,496	1,208	1,225	1,134
일일 발생량	248.8	49.4	82.1	39.7	40.3	37.3

○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

(단위 : 톤/일)

시 설 별	총계	공 공 시 설				민 간 시 설			
		계	용연 (SBK)	시 소각장	온산 유기성	계	울산 자원화	대건 자원화	그린 이엔텍
처리용량	644	504	180	224	100	140	60	30	50

※ 광역시 유기성폐기물 신재생에너지화 : 2012년 12월 준공 예정

3. 용도폐지 대상 공공시설 현황

○ 사 업 비 : 3,904백만원(국 1,171, 시 1,366, 구 457, 민 910) ○ 보수공사비 : 945백만원(국 222, 시 259, 구 464)

○ 면 적:부지 3,229㎡, 건물 992.22㎡(1층 731.73, 2층 260.49) ○ 준공일자: 2003년 4월 10일 ○ 시설규모 및 처리방식: 80톤/일, 퇴비화 ○ 민자운영기간: 2003. 4. 10 ~ 2009. 11. 27(처리물량 181,003톤 처리) ※ 운영자: 경울산업(주) 대표이사 손병상

영 : 2009. 12. 11 ~ 현재

4. 용도폐지 후 공공시설 재산 조치

○ 구 의회 공공시설 처분 의결요구 : 2012. 2월중

○ 용도폐지 의결 후 공공시설 매각조치

5. 관련법규

○ 지방자치법 제39조, 같은법 시행령 제36조

의안심사보고서

(의 안 번 호 888)

1. 의 안 명: 울산광역시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폐지의 건

2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2. 2. 8.(수)

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나. 제

다. 위원회 회부 : 2012. 2. 13.(월) 라. 위원회 심사 : 2011.

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생활지워국장)

가. 제안이유

○ 2013년 1월부터 런던협약에 의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 어 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 폐쇄가 불가피하여

○ 공공시설 용도폐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, 동법 시행 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2013년 1월부터 런던협약에 의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

어 중구 2차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, ○ 2012년 10월경 광역시 소각장 증설 준공과 연계하여 음식물 자원화시설 부지에 조경조성이 예정되어 있어, 광역시 요청에 의거음식물자원화 시설을 2012. 2. 25일 가동중단 후 용도폐지 및 매각정비코자 함.

○ 2012. 2. 25일부터는 SBK(음식물 처리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시 설)및 시 소각장에 반입할 예정임

4. 근거법규

○ 지방자치법 제39조, 같은법 시행령 제36조

5. 검토의견 (전문위원 손중익)

○ 본 안건은 2013년 1월부터 런던협약 발효로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됨으로써 중구 2차 시설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며, 또한 관 런시설 부지는 광역시 부지로서 토지사용 무상허가 2012.10.24일까지 이나 2012년 10월경 광역시 소각장 증설준공과 연 계하여 관련시설 부지에 조경조성을 목적으로 시설물 조기철거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